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, 각종 안전문제 및 사회경제적 위해(危害)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,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에서 제12조)
- 정비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및 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,
 - 안 제3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시책강구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,
 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, 건축물 실태조사 및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건축물의 정비사업 시행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,
 -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자문단 구성·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 조례안은
 -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을 입법취지에 따라 조례에 담은 것으로 법령에 부합하며,

-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및 위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, 장기방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,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. 끝.